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개정 2020.05.04

주무부서 : 산학협력기획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정관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선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6.3.1.>

제4조(산학협력단의 목적 및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대학의 정관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

②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연구소 중앙관리(연구소 설립 및 운영 지원, 평가, 통폐합, 관리 등)에 관한 업무
<개정 2006.05.01.>
7. 교외 연구비 중앙관리(수입 및 지출, 진도관리, 경과보고, 결산, 증빙자료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개정 2006.05.01.>
8. 학교 기업에 관한 업무<개정 2006.05.01.>
9. 벤처기업 지원 및 관리 업무<개정 2006.05.01.>
10. 수익사업에 관한 업무(학교 기업을 통한 수익사업)<개정 2006.05.01.>
11. 출판 인쇄<개정 2010.12.20.>
12. 광고제작 대행 기획<개정 2010.12.20.>
13. 식품 제조 도,소매<개정 2010.12.20.>
14. 기타 수익사업<개정 2010.12.20.>
15. 통신판매<개정 2010.12.20.>
16. 창업자 선발, 보육, 투자<개정 2020.05.04.>
1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0.12.20.>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관 또는 조직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1. 본교에 설치된 산학연 협력 관련 부설 연구소<개정 2016.3.1.>
2. 국가 R&D 사업과 관련된 국책 사업단 등<개정 2016.3.1.>
3. 그 밖에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개정 2016.3.1.>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이사) ① 산학협력단은 업무집행기구로서 1인의 이사를 둔다.
②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임 중 이사가 된다.

- 제7조(단장 및 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이나 외부에서 전문 인사를 초빙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은 대외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조직을 총괄한다.
⑤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후임 단장 선임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산학협력단 부단장은 필요한 경우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단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 제8조(직원)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 연구원,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
②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된 자는 대학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연구원, 사무보조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연구원, 사무보조원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산학협력단 조직 및 운영)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안에 운영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재산 및 회계

- 제11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학교법인의 출연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등

- 제12조(운영경비) 산학협력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2. 출연금·기부금·보조금
3. 사업 수익금
4. 차입금 등

- 제13조(재무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산학협력단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산학협력단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산학협력단 채권의 포기

제14조(회계)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와 같다.<개정 2016.3.1.>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1.>

제16조(정관의 변경) 총장은 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해산은 총장의 명에 의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본교에 귀속한다.<개정 2016.3.1.>

④ 산학협력단의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고)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3.1.>

1. 법령에서 정한 의한 공고사항<개정 2016.3.1.>

2. 변경 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3.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의 수행 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개정 2016.3.1.>

② 공고 방법은 중앙지 신문으로 한다.

제19조(준용)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6.3.1.>

부칙<2004.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시행일은 2004년 2월 1일로 한다.

제2조(의무 및 권리 승계)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 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특허권 등) 총장은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2006.5.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의 시행일은 2006년 5월 1일로 한다.

부칙<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의 시행일은 2010년 12월 20일로 한다.

부칙<2016.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의 시행일은 2016년 3월 1일로 한다.

부칙<2016.6.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개정규정 중 2016학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조직개편일인 2016년 3월1일을 시행일로 본다.

부칙<2020.5.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정관의 시행일은 2020년 5월 4일로 한다.